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의안 번호	1684
----------	------

제안년월일 : 2017년 3월 2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6년 8월 25일 박마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5), 2017년 2월 17일 박운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63) 이상 2건을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7.3.2.)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도모하고 예산안의결의 법정기한을 준수하고자,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사일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기하고자 함.
- 시장 및 교육감이 예산을 전용한 경우,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남용을 막고 시민의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호해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토록 조정함(안 제8조제2호).
- 시장 및 교육감이 예산 전용 결정을 한 경우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55조의2제2항 신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제5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p> <p>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일로 한다.</p>	<p>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p>
<p>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의 등의 제출) 시장 및 교육감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의 등의 제출)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